제85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선불·직불지급수단에 대한 연계·제휴서비스 규제 근거 마련(신설) ○ 선불·직불지급수단 등에도 연계·제휴서비스 규제를 적용 ▶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.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(신설) ○ 외화보험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▶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.투자성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 대상 확대(강화) ○ 불초청권유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사전동의가 필요, 이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것을 금지 ▶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	1.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2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보험사업자의 보험·공제 가입 계약에 응할 의무 및 동 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 청구권 처분 제한 규정 신설(신설) ○ 보험가입 대상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 등 ▶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(교육부)	1.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선정(신설) ㅇ 매 회계연도에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학교법인 등은 선정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고,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낮은 학교법인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매 회계연도에 직전 회계연도 선정 연기 여부, 회계부정 가능성, 자산총계 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선정 우선순위 결정 ▶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2.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제외 요건(신설) ㅇ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등, 사학기관 지정외부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감사인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 ▶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3.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사유(신설) ㅇ 학교법인은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결격사유, 제척사유가 있거나 감사보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지정요청을 할 수 있음 ▶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(환경부)	1.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(강화) ○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'23.1.1일에서 '28.1.1일로 연장 ▶자원순환기본법 제33조	1.중요
5	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(신설) 내열성시험 신설 ○ 구조대 내열성시험(용융 및 변형 여부, 수축률 허용 범위) 도입 ▶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, 제26조의2	1.비중요
6	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영양사 보수교육 강화(강화) ○ 식품위생교육 이수시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은것으로 보는 갈음조항 삭제 등 ▶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	1.비중요
7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현행화 및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확대(강화) ○ '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% 완화기준 삭제 등 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	1.비중요
8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소방청)	1.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확대(강화) ○ 입원실이 있는 의원 및 전통시장 등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포함 ▶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성능위주 설계 대상 확대(강화) ㅇ 일정기준*에 해당하는 터널 또는 수저(水底)터널을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 *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창고시설 및 지하가 중 길이가 5천미터 이상 ▶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3.소방시설 설치의무 확대(강화) ㅇ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 확대 * 30층 미만의 오피스텔 주방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▶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.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대상 확대(강화) ㅇ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,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를 추가 ▶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5.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(신설) ㅇ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의 아파트 제외규정 삭제 등 ▶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	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조치 및 공개(신설) ㅇ 자체점검결과 발견된 불량사항 중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즉각적인 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항목을 규정하고,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의무를 부여 ▶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,제35조 7.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(강화) ㅇ 업종별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수와 경력, 등급을 세분화하고 소방시설 점검이 가능한 범위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함. ▶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	6.비중요 7.비중요